

의안번호	제 427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박문희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0년 5월 29일

#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문희 의원 대표발의)

발의연월일 : 2020년 5월 29일

발 의 자 : 박문희 · 박우양 · 임영은 · 박재완 · 이상식 · 이상정 · 이의영 의원(7인)

의안 번호	427
----------	-----

## 1. 제안 이유

- 농촌체험마을 등이 관련 사업 추진 시 마을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는 조항과 사업평가 시 실적이 부진할 경우 다음 연도 지원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체험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 내용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의 개정(안 제2조)
- 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농촌체험마을 등 사업운영 시 마을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하는 단서조항 신설(안 제4조)
- 체험마을 등의 사업평가 시 실적이 부진할 경우 다음 연도 지원액의 변경 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항 신설(안 제10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5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6. 관련부서 협의 : 농정국 농업정책과와 협의완료

7. 조례안예고 : 2020.5.15. ~ 2020.5.25.(10일간, 특이의견 없음)

##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여 관광과 체험을 접목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함은 물론 마을의 소득증대 및 농촌의 활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농촌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체험마을 또는 체험마을연합체(이하 “체험마을 등”이라 한다)는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거나, 시장·군수가 추천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마을 등으로 한다. 다만, 마을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.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도지사는 농촌체험관광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체험마을 등에 대하여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부진한 체험마을 등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지원액을 변경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 체험마을을 육성하여 관광과 접목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함은 물론 농촌의 활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 체험마을을 육성하여 관광과 체험을 접목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함은 물론 마을의 소득증대 및 농촌의 활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(정의) -----.</p> <p>1. “농촌”이란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.</p> <p>1. “농촌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.</p>
<p>제4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체험마을 또는 체험마을연합체(이하 “체험마을 등”이라 한다)는 운영 실적이 우수하거나, 시장·군수가 추천하거나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마을 등으로 한다.</p>	<p>제4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체험마을 또는 체험마을연합체(이하 “체험마을 등”이라 한다)는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거나, 시장·군수가 추천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마을 등으로 한다. 다만, 마을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지원내용) ① (생략)</p> <p>② <u>도지사는 농촌체험관광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 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10조(지도감독 및 평가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<u>(신설)</u></p>	<p>제5조(지원내용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도지사는 농촌체험관광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체험마을 등에 대하여 「충청북도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10조(지도감독 및 평가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부진한 체험마을 등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지원액을 변경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</u></p>

# 관계 법령

## □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5. “농촌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.

가. 읍·면의 지역

나.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, 농업 관련 산업, 농업 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

## □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

제5조(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) ①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“시장·군수등“이라 한다)에게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사업목적, 대표자,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·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또는 정관
2. 사업계획서
3. 각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
4. 그 밖에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자의 참여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